

### 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○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### □ 채무조정의 요건

○ 채무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

- ①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40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
- ②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, 중재 등이 진행 중인 경우
- ③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④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경우
- ⑤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·간이회생·개인회생 또는 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⑥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후 회생절차폐지·간이회생 절차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

### □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및 방법

○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채권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하며,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\*에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.

\* 아래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 보완하는 기간은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
#### ■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- ① 채무조정요청서
- ② 채무조정안(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)
- ③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- ④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⑤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

#### ■ 요청방법

- 영업점 신청: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: 팩스 또는 우편으로 관련 서류 제출하여 채무조정 요청

○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을 제안하거나 채무조정을 결정하여 채무조정안을 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고, 동의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.

▪ **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**

- ① 상기 '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'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정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③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, 채권금융회사 등이 결정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

▪ **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는 경우**

- ①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실업,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, 이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합의 해제 가능)
- ②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- ③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은닉,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- ④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- ⑤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- ⑥ 채무자가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
□ **채무조정 내용**

채무조정 내용(예시)			
상환유예	상환기간 연장	분할 변제	원리금 감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장 3개월</li> <li>▶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장 3년 이내 만기연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최장 5년 이내 분할 상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원금 0%~30% 감면</li> <li>▶ 이자 일부 감면</li> </ul>

□ 채무조정 절차

① 요청	② 심사 및 결과통지	③ 동의	④ 채무조정서 작성	⑤ 합의
(채무자)	(채권금융회사)	(채무자)	(채권금융회사)	(채무자)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	▶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▶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	▶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	▶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
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▪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
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회생

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▪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
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